

「20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에 재도전*하는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예비)재창업자도 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일까지 '채무조정 완료자'에 한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지원규모 : 총 270명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기간 : '20년 5월~12월(8개월간)

2.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40~60백만원)	
②프로그램 지원	재창업 교육	실패원인분석, 심리치유, 비즈니스 모델 수립·고도화 등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네트워킹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멘토링·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창업활동을 위한 입주공간 제공 (별도 평가를 통해 제공)	
④ 후속연계 지원	1차년도 수행기업 중 우수 재창업자 대상으로 2차년도 후속자금 지원	

① 사업화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40~60백만원 차등 지원)

< 사업비 구성(안) >

총 사업비(A+B)	정부지원금(A)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현금	현물*	소계(B)
100%	75% 이하	5% 이상	20% 이하	25% 이상
(예시) 80백만원	60백만원	4백만원	16백만원	20백만원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재창업교육) 실패원인분석 및 심리 치유,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재창업교육 수강 지원(35시간 이상)

- 별도 교육형 주관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예정

※ 상기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2차년도 후속지원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멘토링)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수시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수시 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④ 후속연계 지원 :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재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후속 프로그램 추가 지원(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17.1.30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20.1.30)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②-1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7.1.30 이후 재창업한 기업)

☞ ②-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 ②-3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1'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0.2.28)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최종 선정 시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최종선정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지원 가능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⑤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⑥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⑧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4. 사업 신청

- 광고기간 : '20. 1. 30(목)~'20. 2. 28(금), 18:00까지
-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 : '20. 2. 24(월)~'20. 2. 2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www.k-startup.go.kr)

* [별첨 1, 2] 사업계획서 양식, 증빙서류 제출 양식 참조

<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 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업로드 용량은 '50메가바이트(MB)'로 제한되며, 초과 시 등록 불가

- 채무조정(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 시 '채무조정 필요 여부' 필수 선택

- 또한, 방문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가능 일자 선택

* [별첨 3]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제도 소개 참조

< 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

①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 완료 → ② 채무조정 필요자에 한해 본인이 선택한 상담일자에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③ '지부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가능 여부 확인' → ④ 적격자에 한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 ⑤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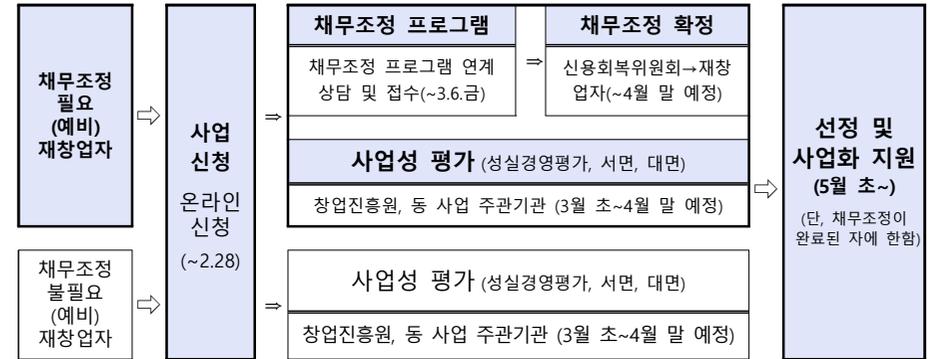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평균 2개월 소요) 참여를 위해 조기 사업 신청 완료 및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권장

☞ 채무조정 프로그램 상담·접수 등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요청일'은 '20.3.6(금)이내로 설정

☞ (예비)재창업자가 사업신청 완료 후 '채무조정 상담 요청일'에 신복위 지부 방문 시 상담 예약 없이도 상담 및 접수 가능 (사업신청 미 완료시 상담 예약 스케줄에 따라 변동 가능)

* 채무조정 프로그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재도전 성공패키지(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시) 사업 선정 절차(안)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성실경영평가,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①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② (서면평가) 문제인식 수준(폐업원인 분석 등) 및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③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예비)재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사업화 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서면/대면평가 항목 세부내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고객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등
실현가능성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등

□ 평가절차(안)

주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구분	① 성실경영평가	② 서면평가	③ 대면평가
일정	'20.3월 초~3월 중	'20.3월 중~3월 말	'20.4월 초~중
비고	부적합 판정 시 소명기회 부여(1회)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일정은 온라인 신청·접수 시 선택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가점사항(서면평가 시 반영)

<p>[2점] ① ~ ③ 항목별 각 2점 부여</p> <p>①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아이템 * [참고 3] 4차 산업혁명 관련 가점 분야 참조</p> <p>② 청년('20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p> <p>③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거주자*</p> <p>* (예비 재창업자) 주민등록 상 거주지 기준 / (재창업자)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 기준</p> <p>[1점] ① ~ ⑨ 항목별 각 1점 부여</p> <p>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p> <p>②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p> <p>③ 2019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입상자</p> <p>④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p> <p>⑤ 2019년 힐링캠프 및 희망캠프 이수자(렛츠 추천자에 한함)</p> <p>⑥ 최근 2년 이내('18.1.30 이후)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재창업경진대회 등) 수상자</p> <p>*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선 입상자 제외)</p> <p>⑦ 최근 2년 이내('18.1.30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주최·주관 하는 기술창업교육(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실전창업과정 등) 수료자</p> <p>⑧ 최근 5년 이내('15.1.30 이후) 유효한 벤처기업·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사실이 있는 자(재창업 전 기업, 재창업 기업 모두 해당)</p> <p>※ 신청·접수 마감일('20.2.28) 기준 해당 가점 보유자</p> <p>※ 복수의 가점(1, 2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4점 부여</p> <p>※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은 전담기관에서 가점 가능 여부 별도 조회 예정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취득한 인증이 복수인 경우 '가점 1점' 부여</p>
--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지침 및 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 (시제품 제작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재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 재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재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교육형 주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재창업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정해진 교육시간(3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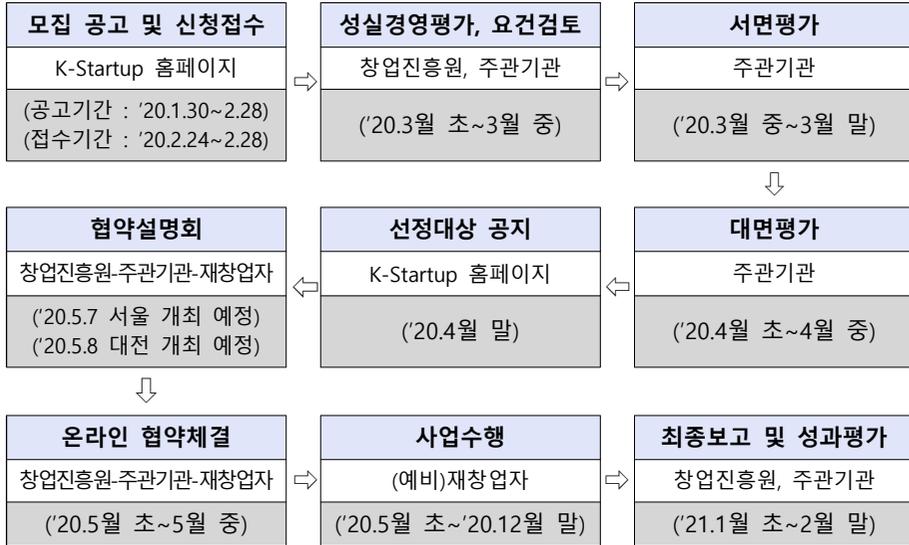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재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가 발생하면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고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정책자금에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 * 제3자 부당개입이란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이 최종 선정 전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대면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대면평가는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재도전 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8.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9.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 없이 1357

※ 주관기관 소개자료 및 연락처는 별도 게시 예정('20.2.24 예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참고 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여비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9조~제48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를 참조,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20개 분야, 152개 기술개발테마

전략분야	전략품목	전략분야	전략품목
인공 지능 (6)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화자 확인 시스템 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공공서비스 특화 챗봇 시스템 텍스트 기반 시각 데이터 이해 및 검색 서비스	지능형 반도체 (8)	차세대 서버용 DDR5 메모리 모듈(DIMM)용 PMIC MEMS 센서 CMOS 이미지 센서 기반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 개방형 적응 능동소음제어(ANC) 귀마개(earmuffs) system-on-chip 반도체 초저전압 고신뢰성 뉴로모픽 엔진 탑재 마이크로 컨트롤러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제어기 능동형 IoT 디바이스 보안용 반도체
빅 데이터 (6)	빅데이터 내 데이터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 자연어 처리기반 텍스트 마이닝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데이터 3D 변환 시각화 도구 감성정보 분석 서비스	첨단 소재 (5)	가능성 나노 소재 이종접합 소재 소프트 기계장치용 소재 보건/의료용 기능성 소재 전기자동차용 알루미늄 고방열 압축재
클라우드 (8)	Real-time IoT 실현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통합 보안서비스 클라우드 현장 협업 플랫폼 전시 행사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 브로커링	스마트 헬스 케어 (8)	신속정확한 현장검사형(POCT) 면역진단 키트 스마트 헬스 웨어러블 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및 플랫폼 유전체분석(NGS) 플랫폼 비즈니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기 및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스마트 안티 폴루션 추천시스템 면역억제제
사물 인터넷 (6)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보안 시스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가상화 시스템 IoT 스마트뷰티 IoT 스마트완구 및 도구 요양병원 지원 IoT 시스템 IoT 기반 물류 트래킹 시스템	AR·VR (8)	AR/VR 무선 시뮬레이터 AR/VR 교육 및 의료용 체험 콘텐츠 AR/VR 기반 안전 체험 솔루션 햅틱 피드백 장비 AR/VR 디지털 사이니지 AR/VR 유통 플랫폼 AR/VR 실시간 전송 및 중계 시스템 AR/V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5G (6)	5G 통신 모듈 탑재 사물인터넷 기기 5G 프론트홀/백홀 시스템 5G 네트워크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및 캐싱 시스템 융복합 다기능 RF 및 안테나 초고속 이동체용 무선통신 서비스 차세대 초고속 모듈 및 AP 부품	드론(8)	소형 드론용 고출력 추진체 딤러닝 기반 AI 물체인식 소형 카메라 모듈 패키지 드론용 고신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다수 무인항공기 상대위치 및 속도 추정 복합항법 생명체 식별 탐색 드론 화재 진압용 드론 산업용 드론 교육연수 SW 다국적용 드론교육 시스템
3D 프린팅 (6)	개인맞춤형 3D프린팅 의료기기 3D출력 데이터 기반 응용 SW 의료영상 3D모델링 및 3D프린팅 클라우드 시스템SW 3D프린팅용 고분자소재 3D프린팅용 금속분말소재 Binder Jetting 3D프린터	블록 체인 (9)	블록체인 기반 소액 기부/후원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중고거래 통합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쇼핑몰 블록체인 기반 u-wellness 서비스 블록체인 암호키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

전략분야	전략품목	전략분야	전략품목
스마트 공장 (22)	MES 활용 제조 애플리케이션 비전 기반 제조품질 검사 시스템 스마트 제조 CPS 제조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엔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작업현황 분석 및 예측 장치 제조 데이터 처리용 엣지컴퓨팅 시스템 제조 기반 사이버 보안 스마트공장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장치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중소제조기업용 협동로봇 3D프린팅 기반 친환경자동차용 전장부품 등각생각 채널 적용 3D프린팅 금형 설계 및 제작 시스템 저전력 정보처리가능 단말기 IoT 공장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전류센서 IC 유연생산시스템(FMS)용 무인반송차(AGV) 스마트 집진기 기계설비 바이탈 사인 기반 설비 모니터링 및 예측진단용 IoT 센서 환경센서 스마트 포장설비 스마트 물류 적용 RFID·센서 CT센서조명기술 융합 긴급 재난안전 장치	자율 주행차 (6)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AR 기반 실제 도로 환경 사고재현 장치 국산 저가형 2D 라이다 소스 자율주행 차량용 리던던시 전원/통신 시스템 무인 물류 차량 자율주행차량 사고방지용 차량제어 능동안전 시스템
스마트 팜 (8)	스마트팜 재난 최소화 용수공급장치 스마트팜 영양 염류 저감 이용 시스템 수출용 스마트팜 플랜트 표준모델 및 자재 스마트 배지 및 나노비료 이미지모션 트래킹 기반의 자율 대응 시스템 환경·안전·에너지 절감형 스마트축산 통합 시스템 AI기반의 스마트팜 플랫폼 작물별 생육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배양액 최적화 시스템	O2O (6)	O2O 서비스 중개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O2O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O2O 서비스 데이터 분석 시스템 한류 뷰티 O2O 서비스 외래관광객용 관광 O2O 서비스 반려동물 케어 O2O 서비스
스마트 시티 (5)	스마트 빌딩 자동화 시스템 도심 내 미세먼지 상세오염도 정보제공 플랫폼 친환경 빗물정화 및 재이용 장치 3차원 위험시설물 감시·관리기능 송수신 장치 전방위 활상 광학계	신재생 에너지 (7)	건물 부착형 혹은 일체형 태양광 발전 고효율 수소 저장 시스템 신재생 연계 융·복합 발전 시스템 바이오매스의 분산형 소형 가스화 발전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축분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이차전지용 핵심소재 및 제품
지능형 로봇 (7)	산업용 근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 가정용 로봇 및 콘텐츠 융합적 사고 교육용 교구재 로봇 엔터테인먼트용 시뮬레이터 로봇 물류 로봇 바이오 공정 자동화 지능형로봇 시스템 재활훈련용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핀테크 (7)	국내외 간편 송금 및 결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서비스 레그테크 서비스 인슈어테크 서비스 모바일 핀테크 보안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서비스